

#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40
----------	---------

제출년월일 : 2013.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와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제2조 및 안제6조)

- 토지수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에관한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나. 띄어쓰기, 문장부호 낫표(「」) 사용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개정근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4.18 ~ 5.8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3. 5. 14)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를 “개량 등의 사업으로”로, “지급에 관한”을 “지급에”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철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를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로,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을 “제거하거나 멸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분 철거”를 각각 “부분철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각호 1과”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촬영항공사진”을 “촬영 항공사진”으로,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납부 등으로”을 “납부대장 등”으로,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을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85㎡이하”를 “85㎡ 이하”로,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등”을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로,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제4조제2호 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를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철거시”를 “철거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관한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 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 설, 정비, <u>개량등의 사업으로</u> <u>인하여</u>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u>지급에 관한 필요</u> <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u>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철 거</u>”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 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 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u>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u> 규정예 <u>의하여</u>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 속시설을 완전히 <u>제거시키거나</u> <u>멸실되는</u>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u>부분 철거</u>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 <u>부분 철거</u> 도 철거로 본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 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 례</u></p> <p>제1조(목적) ----- ----- ----- <u>개량 등의 사업으로</u> ----- ----- <u>지급에</u> ----- -----.</p> <p>제2조(정의) ----- “<u>철 거</u>”란 「<u>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도시계 획사업, 「<u>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 의 ----- 「<u>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45 조에 따라 ----- ----- <u>제거하거 나 멸실하는</u> -----. ----- <u>부분철거</u>----- ----- <u>부분철거</u>-----.</p> <p>제3조(적용범위) -----</p>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생략)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당해 토지소

----- 무허가건물-----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현행과 같음)
2. ----- 촬영 항공사  
진----- 무허가건  
물
3. ----- 납부대장 등-----  
-----  
----- 확증이 있  
는 무허가건물
4. -----  
----- 85㎡ 이하  
-----  
-----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  
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  
-----  
-----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

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  
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생략)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  
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  
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  
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  
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  
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  
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  
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대상자) ----- 해  
당 -----  
-----  
-----  
----- 철거 시-----  
-----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  
----- 「지방세  
법」에 따른 -----  
-----.

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  
-----  
-----.